

##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 : 2004. 1.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4. 1. 8.
- 다. 의안번호 : 제 2004 - 4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 14(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안이유

- 최근 노인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해 노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 또한 이들 대부분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경제적인 큰 고통을 주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위해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치매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규정함(안 제4조)
-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정한 치료 등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함(안 제6조)
-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등 의료수가, 입원 및 퇴원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공유재산은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공공시설 설치 승인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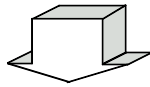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2003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음.

### 나. 운 영(제4조 제1항)

- 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한다 ⇒ 군수가 병원을 설치·운영 하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 다. 수탁자의 요건(제4조 제1항 제1호)

1.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대행(제4조 제3항)

- 의료장비는 대부분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군에서 직접 구입으로 예산절감
- ⇒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와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업무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운영경비 부담(제4조 제4항)

- 병원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병원운영에서 적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 5. 토론요지

- 제안이유를 보면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도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치매 환자만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치매환자 치료도 필요하지만 중풍,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므로 이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원으로도 충분히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6. 수정안 요지

- 제9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관계법령”으로 변경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치매요양병원의 업무,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수탁자의 의무, 병원관리규정, 의료수가, 공유재산의 사용, 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설치경비의 일부가 국고에서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2003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제9조 중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법률, 대통령령, 조례와 관련이 있어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과 같이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